

교원 연봉제 운영규정

제정 2000. 1. 1 개정 2004. 3.18 개정 2016. 3.16
 개정 2000. 3. 1 개정 2006. 6. 1
 개정 2000. 8.11 개정 2007. 2.16
 개정 2002. 3. 1 개정 2008. 9.16
 개정 2004. 2. 1 개정 2013. 3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연봉제(이하 “연봉제“라 한다) 시행에 필요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3조 제1항의 교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 다만, 탁월한 교원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 규정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보수“라 함은 연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 (개정: 2006.6.1)(개정: 2013.3.1)
2. “연봉“이라 함은 교원 개인의 능력, 경력,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을 말하며, 교원 개인에게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. (개정: 2006.6.1)(개정: 2013.3.1)
3. “제수당“이라 함은 “보직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초과강의료, 주거안정수당 등“을 말하며, 인상을 적용 및 기본연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 (개정: 2008.9.16)
4. “월봉액“이라 함은 개인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(개정: 2006.6.1)
5. “일할계산“이라 함은 그 달의 월봉액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, “근무일수“라 함은 발령일을 포함해서 재직한 일수이며 중간의 휴무일을 포함한다.

제4조(보수의 체계) 교원의 보수체계는 연봉 및 제수당으로 한다. (개정: 2006.6.1)

제5조(지급방법) ① 연봉이 책정되면 12개월로 균등배분하여 매월 지급한다. (개정: 2008.9.16)(개정: 2013.3.1)

② 제수당은 지급 해당월 15일 현재의 기준으로 지급한다.

제6조(계산기간) 교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근태계산기간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로 한다.

제7조(단수처리) 제5조에 의거하여 교원에게 지급되는 월봉액을 계산할 때 원미만 단수는 버린다.

제8조(계산기준) ① 월봉액 계산은 임용, 전보 및 복직 발령일로부터 기산하고 휴업, 휴직, 정직 발령전일 및 면직 발령일로 마감한다. 다만, 파면 이외의 사유로 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당월분 월봉액 전액을 지급한다.

② 감봉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발령된 달의 월봉액 계산 기산일로부터 감봉 기간 감액한다.

③ 면직, 휴직 또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그 기간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월봉액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정직 또는 파면 발령일이 당월 보수 지급 이후에 시행된 때에는 기 지급된 보수 지급액은 회수하지 아니한다.

⑤ 이 규정이 개정된 때에는 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당월분 보수를 지급한다.

⑥ 퇴직한 자에게는 보수지급 이후에 보수의 인상으로 소급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⑦ 일할계산시 일당기준금액은 월봉액을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.(개정: 2007.2.16)

⑧ 일할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$$: \text{일당기준금액} \times \text{근무일수} = \text{지급액}$$

제9조(겸직시 보수) 교원이 겸직할 때에는 상위직에 해당하는 보수만을 지급한다.

제10조(결근시 보수) ① 당월 지급기간내에 유계결근 총일수가 7일 이내인 때에는 당월분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고, 8일 이상인 때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.

② 무계결근시 보수는 결근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만큼 감액 지급한다.

제11조(휴직 및 징계중의 보수) ① 휴직한 교원의 휴직 기간중 월봉액은 법인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② 징계 중의 보수는 교원인사규정 제40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12조(지급일) ① 교원의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② 사망자나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.

제 2 장 적용 및 평가

제13조(총연봉 책정원칙) ① (개정: 2006.6.1) (삭제: 2013.3.1)

② 연봉은 총재원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과 교원 개인의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책정한다. (개정: 2006.6.1)(개정: 2013.3.1)

③ (개정: 2006.6.1)(삭제: 2013.3.1)

④ 총장은 제2항에 의한 개인별 차등책정과는 별도로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학과별로 차등 책정할 수 있다.

⑤ (삭제: 2006.6.1)

제14조(평가절차 및 연봉책정) ① 교원의 업적평가는 소속학과(학부)의 장이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② 총장은 학과(학부)의 장의 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교원 개인별 연봉을 확정, 시행한다. (개정: 2006.6.1)

③ 신규임용 교원의 연봉은 경력과 능력에 따라 소속학과(학부)의 장과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.

④ 부총장, 대학원장, 각 처장, 학술정보처장 등 주요보직자와 각 학과(학부)의 장에 대한 업적평가는 총장이 별도로 수행한다.

⑤ (삭제: 2006.6.1)

⑥ (삭제: 2006.6.1)

제15조(평가항목) ① 교원의 업적평가 항목은 교육, 연구(학술연구/산업연구), 봉사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: 2016.3.16)

② 연구부문은 연구비 수혜실적, 논문발표실적, 연구결과 활용실적, 산학협력실적 수상실적 등을 포함한다.(개정: 2016.3.16)

③ 교육부문은 강의평가, 석·박사 배출실적, 교수법 개발실적, 교과과정 개발, 교재 개발 실적 등을 포함한다.

④ 봉사부문은 국내외 학회활동 실적, 교내 및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활동실적 등을 포함한다.

제16조(평가방법 등)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각 학과별 자체적으로 설정 후 시행한다. (개정: 2016.3.16)

제 3 장 제 수 당

제17조(가족수당) (삭제: 2009.9.16)

제18조(보직수당) 교육행정사무의 책임을 맡은 교원에 대하여 별표2의 보직수당을 지급한다.

제19조(자녀학비보조수당) 교원에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20조(개인연금보조수당) (삭제: 2013.3.1)

제21조(초과강의료)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강의료 지급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.

제21조의2(주거안정수당) 교원에게는 주거안정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: 2000.8.11)

제22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또는 기타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① 2000년 1월에 지급하는 보수의 계산기간은 1999년 12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2000년도 기본연봉은 1999년 12월 기준으로 교원 보수체계 중 본봉, 연구보조비, 교재개발비, 기말수당(600%), 정근수당(200%), 체력단련비(250%)를 합산한 금액을 1999년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하여 책정한다.
- ③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시행일로부터 교직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① 2000년 3월에 지급되는 보수의 계산기간은 2000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.
- ② 2000년도 기본연봉은 1999년 12월 기준으로 교원 보수체계 중 본봉, 연구보조비, 교재개발비, 기말수당(600%), 정근수당(200%), 체력단련비(250%), 하계휴가비를 합산한 금액을 1999년도 개인별 기본연봉으로 하여 책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8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6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하며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된 업적연봉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7년 2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6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2. (가족수당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가족수당 지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
3. (차량유지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개정 시행과 동시에 ‘자기차량유지비지급 지침’은 폐지하며, 이 규정 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에게는 2008년 9월 15일 기준 차량유지비 지급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20조 개인연금보조수당 폐지는 2012년 12월 급여지급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6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, 제16조의 개정 내용은 2017년 교원 업적평가부터 적용한다.

(별표1) 가족수당(삭제: 2008.9.16)

(별표2) 보직수당

보 직 수 당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금 액
부총장	1,000
대학원장 (일반, 전문·특수 대학원)	750
처장/산학협력단장급 (대외협력, 기획, 교무, 입학·학생, 행정, 연구, 학술정보, 산학 협력단장)	750
주임교수급/학부장급 (학과 주임교수, 인문사회학부장, 환경공학부장)	500
부처장	500
부속기관 / 부설연구소(A급) (기술지원센터장, 교육개발센터장, 창업보육센터장, 중앙기기 센터장)	300
부속기관 / 부설연구소(B급) (학생상담센터장, 신문사주간, 사감, POSTECH 어학센터장, 리더십센터장)	250
우수연구센터장	150